

## 께た**ル** 노량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

5회 (12/18)

- 1. 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, 등기의무자는 Z이다. (○, ×) <31회>
- 2.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. (○, ×) <30회>
- 3.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, 甲이 절 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. (○, ×) <30회>
- 4.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 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,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. (○, ×) <31회>
- 5.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신청할 수 없을 때 등기권리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제권판결이 있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 명하여 단독으로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. (○, ×) <31회>
- 6.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. (○, ×) <31회>
- 7.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. (〇, ×) <31회>
- 8.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(O, ×) <29회>
- 9.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, 등기관을 채무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 다. (O, ×) <31회>

## 께**‱ └**양진캠퍼스 매일정리노트(O.X)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

5회 (12/18)

## 10.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,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.
- ②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,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 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,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 소에 제공해야 한다.
-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,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.

## 매일정리노트(O, X) 정답

- 1. 0
- 2.  $\bigcirc$
- 3.  $\bigcirc$
- 4. ×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 결을 받은 경우,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.
- 5.  $\bigcirc$
- 6. ×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7. O
- 8. ×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9.  $\bigcirc$
- 10.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,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.